감 정 평 가 서

건 명	전병식 소유물건 (2026타경1339)
감정의뢰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평가서번호	DS260624-01

디에스감정평가사사무소

TEL. 053-743-9134
FAX. 053-745-9134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 정 평 가 사 (인)
김 대 성

감정평가액	이억구천칠백만원정(₩297,000,000.-)			
의 뢰 인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손현정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 무 자	-	제 출 처	경매3계	
소 유 자 (대상업체명)	전 병 식 (2026타경1339)	기 준 가 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 건	-	
목 록 표 시 근 거	귀 제시목록	기 준 시 점	조 사 기 간	작 성 일
		2026.06.30	2026.06.29 ~ 2026.06.30	2026.07.06

감정평가내용

공부(公簿)(의뢰)		사 정		감 정 평 가 액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종 류	면적(㎡) 또는 수량	단 가	금 액
구분건물	1세대 이	구분건물	1세대 하	- 여	297,000,000 백
합 계					₩297,000,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 사 자 : 감 정 평 가 사 (인)
전 경 식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Ⅰ. 감정평가개요

1. 감정평가 목적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용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는 '지산보성맨션 105동 1층 103호 구분건물'로서 '대구지방법원의 경매'목적의 감정평가임.

2. 대상물건 개요

▫ 구분건물

소재지(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0-1,1271-1 (수성구 지범로21길 3) 지산보성맨션 105동 1층 103호

▦ 단지 내역

단지명	지산보성맨션	단지세대수	526세대
대지면적	-	연면적	72,214.22㎡
건축면적	6,659.32㎡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62,022.4㎡
건폐율	-	용적률	-

> 동별 건물내역

동명칭	105동	동 세대수	90세대
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연면적	11,353.38㎡
건축면적	774.96㎡	용적율산정용 연면적	11,353.38㎡
층수	지상 15 층	사용승인일	1991-08-12

> 호별 건물내역

기호	동	층	호	전유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비율
(가)	105동	1층	103호	113.09	33.1403	26,263.5 중 55.77/26,263.5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기준시점 및 조사기간

가.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대상물건의 가격조사 완료일인 2026년 06월 30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함.

나. 실지조사 실시기간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조사 : 2026년 06월 29일, 2026년 06월 30일.

4.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가.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본건의 평가목적을 고려하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 기준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나.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해당사항 없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Ⅱ.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감정평가방법

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은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원가법,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래사례비교법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수익환원법이 있음.

나. 원가법이란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다. 거래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라. 수익환원법이란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마. 공시지가기준법이란 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임.

2. 감정평가방법의 적용규정

가. 본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 실무기준』에 의거함.

나.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1조에서는 감정평가방식을, 제12조에서는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및 시산가액조정을 규정하고 있음.

다.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대상물건별 주된 감정평가방법, 제14조에서는 토지의 감정평가방법, 제15조에서는 건물의 감정평가방법, 제16조에서는 토지와 건물의 일괄 감정평가방법을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가. 구분소유건물의 평가방법

· 본건은 거래가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성이 높은 구분건물로서 인근 유사 아파트의 일반적인 거래시세와 입지조건, 부근상황 및 건물의 구조, 용재, 시공상태, 설비상태, 층별·향별·위치별 효용성 등의 제반 가치형성요인을 종합참작하여 건물부분과 대지권을 일체로 한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상물건의 특성상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곤란하여『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거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의한 시산가액과의 비교·검토는 생략하였음.

나. 구분소유건물의 토지·건물 가격배분

· 구분소유건물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구분건물과 대지사용권이 일체성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이에 따라 분양 및 거래가 되므로 토지·건물의 구분평가는 곤란하나, 귀 요청에 의하여 평가대상 부동산의 평가가격을 토지가격과 건물가격으로 배분하여 감정평가명세표상에 부기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Ⅲ. 구분건물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비교사례 선정

가) 인근지역의 실거래사례

(출처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감정평가정보체계)

기호	소재지	해당층/최고층	전유면적(㎡)	대지권지분	사용승인일	거래가격(전유면적단가)	사례일자
(T1)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1동 2층 20*호	2층/12층	113.09	26,263.5중55.77	1991.08.12	300,000,000(@2,652,754/㎡)	2026.02.08
(T2)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3동 3층 30*호	3층/15층	84.99	26,263.5중41.92	1991.08.12	230,000,000(@2,706,200/㎡)	2025.11.03
(T3)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3동 12층 120*호	12층/15층	84.99	26,263.5중41.92	1991.08.12	250,000,000(@2,941,522/㎡)	2025.03.21
(T4)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5동 8층 80*호	8층/15층	113.09	26,263.5중55.77	1991.08.12	330,000,000(@2,918,029/㎡)	2025.01.27

나)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거래사례 중 대상물건과 위치, 규모, 용도, 층별 및 위치별 효용도 등에서 정상가격산정을 위한 비교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판단되는 실거래사례 중 아래의 사례를 비교사례로 선정함.

대상물건별 사례기호	본건 기호(가) : 사례(T1)

2. 사정보정

비교거래사례는 인근지역의 유사물건 가격수준 등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사례로 판단되어 사정보정요인 없음.(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시점수정

가) 시점수정 자료의 선정

· 주거용 구분건물(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한국부동산원 간행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의 월간동향중 주택유형에 따른 지역별/월별 매매가격지수 활용하되, 세분화 지역별 매매가격지수를 우선 적용하여 산정함.

나) 시점수정의 산정

(1) 대구 수성구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2026-02-08~2026-06-30)

시점자료	(평가)기준시점 당시(a)	(거래)사례시점 당시(b)	시점수정치(c=a/b)
대구 수성구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100.0	100.0	1.00000 (0.000%)

▷시점수정치계산 : [대구 수성구] -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26-02-08~2026-06-30)

사례시점 : 2026-02-08 : 거래시점의 직전달인 2026년 01월지수(100.0)를 적용함.

기준시점 : 2026-06-30 : 기준시점의 직전달인 2026년 05월지수(100.0)를 적용함.

▶매매가격지수 변동률 : 100.0 / 100.0 ≒ 1.00000

4. 지역요인 비교

사례물건과 대상물건은 인근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지역요인 대등함(1.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개별요인 비교(가치형성요인)

◎기호(가) : 수성구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5동 1층 103호

◎사례(T1) : 수성구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1동 2층 20*호

요인	비교항목	세부항목	사례대비 격차율	비고
단지 외부 요인	공공시설 및 편익시설과의 접근성 및 편의성	공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1.00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대등함.
		인근 교통시설과의 거리 및 편의성		
	교통 및 도보의 편의성	차량 이용의 편의성(가로의 폭, 구조, 계통, 접면)		
		획지 · 단지의 여건(경사지, 고저)		
	교육환경	교육시설(유치원, 초등학교 등)과의 거리, 등하교의 편리성		
		인근 교육시설의 종류, 학군 선호도		
	자연환경	자연환경(조망, 경관, 풍치 등), 공원 및 녹지 등과의 접근성		
	거주환경	거주환경 조성상태		
		거주환경 저해시설(오염시설, 공해 및 소음유발시설, 위험 및 혐오시설 등)의 유무 및 거리		
단지 내부 요인	시공사의 브랜드		1.00	같은 단지의 아파트로서 대등함.
	건물의 규모	총 세대수, 건물의 최고 층수		
	단지의 구성 및 환경	동의 배치상태, 동간 거리, 면적별 구성비, 공간적 쾌적성(용적률, 건폐율 등)		
		조경 및 녹지 등 조성상태		
	건물의 구조 및 설비	건물의 구조 및 재질		
		현관구조(계단식, 복도식), 외부구조(판상형, 타워형, 혼합형 등), 내진설계, 필로티 유무		
		난방방식(지역난방, 개별난방 등), 각종 설비(승강기 등)의 유무 및 상태		
	건물의 노후도	경과연수 및 잔존내용연수, 리모델링 또는 대수선 여부		
	주차시설 및 공용시설의 상태	세대당 주차대수, 지하 주차장의 유무 및 세대 연결성, 차량 진출입의 용이성, 기계식 주차장의 유무 및 비율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시설, 경로당, 유치원)의 유무 및 상태		
	보안 및 유지관리	보안 및 유지관리 체계 및 관리상태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호별 요인	층별 효용		0.99	본건이 사례대비 층별효용 등에서 다소 열세하고, 1층 시설 등에서 다소 우세하여, 전반적인 호별요인은 다소 열세함.
	위치별 효용(동별 및 라인별)	일조, 채광, 조망 등의 정도, 통풍의 정도		
		엘리베이터, 계단으로의 접근성		
		소음의 영향 정도		
		사생활 침해의 정도		
		공용시설 · 교육시설 · 교통시설 등과의 접근성, 편익시설의 접근성		
	향별 효용			
	전유면적 및 대지사용권	전유부분의 면적 크기, 대지사용권의 크기		
	내부 설계 및 구조 실내 시설 및 관리상태	평면방식(타입 등), 방 및 화장실의 개수, 복층 유무, 1층 전용정원 여부, 다락 · 테라스 · 베란다 등의 유무		
		반지하의 상태(전면 완전 노출형 등)		
기타 요인	개발사업 가능성	재개발 · 재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의 편입 여부	1.00	대등함
	행정적 규제			
	기타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지외부요인 × 단지내부요인 × 호별요인 × 기타요인			0.990	

6. 참고자료

가)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사례

(출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기호	소재지	해당층/최고층	전유면적 대지권	사용승인일	평가금액 전유면적단가	기준시점	비고
(P1)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3동 6층 61*호	6층/15층	84.99 26,263.5 중41.92	1991-08-12	235,000,000 (@2,765,031/㎡)	2026-03-10	경매평가

나) 인근지역의 유사 물건 가격수준

본건과 유사한 규모의 구분건물 가격수준은 층별 · 위치별 · 향별 · 인테리어 상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전유면적기준 2,560,000 ~ 2,960,000원/㎡ 내외인 것으로 조사됨.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시산가액 산출

대상 기호	비교사례(a)		사정 보정 (b)	시점 수정 (c)	지역 요인 비교(d)	개별 요인 비교(e)	면적비교 (f=대상/사례)		시산가액 (전유면적당 단가) (g=axbxcxdxexf)
	기호	가격					대상	사례	
(가)	(T1)	300,000,000	1.00	1.00000	1.00	0.990	113.09	113.09	297,000,000 (@2,626,226/㎡)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Ⅳ. 감정평가액 결정

1.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상기 시산가액은 대상물건의 층별·위치별 효용비율 및 제반 가격형성요인 등을 종합 검토하고, 인근지역내 동종 유사 물건의 정상적인 가격수준, 호가수준 등을 종합 참작하여 산정하였는바, 그 금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함.

2. 물건별 감정평가액 결정

▫ 구분건물

구분	기호	전용면적(㎡)	공용면적(㎡)	대지권비율 환산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건물	(가)	113.09	33.1403	55.77	297,000,000 (@2,626,226/㎡)	-
구분건물 감정평가액 합계					297,000,000	

3. 감정평가액 합계

구분	면적(㎡)	감정평가액(원)	비고
구분건물	113.09	297,000,000	전유면적기준
감정평가액(합계)		297,000,000	

※ 세부내역은 '감정평가명세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21길 3	1270-1, 1271-1 지산 보성맨션 105동	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				
				1층	774.96			
				2층 ~ 15층	각 755.5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가				(내) 철근콘크리트조 1층 103호	113.09	113.09	297,000,000	비준가격 (전용면적: 113.09㎡, 공용면적: 33.140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0-1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11,072.4			
2	"	1271-1	대	제3종일반주거지역	15,191.1			
	대지권의	종류:		1, 2. 소유권				
	대지권의	비율:		1, 2.	55.770 / 26,263.5	55.770 / 26,263.5		
						토지 · 건물	배분내역	

구분건물 감정평가명세표

일련번호	소재지	지 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공 부	면 적 (㎡) 사 정	감정평가액	비 고
						토 지 :	89,100,000	
						건 물 :	207,900,000	
	합 계						₩297,000,000.-	
			이	하	여	백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소재 "용지초등학교" 북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아파트단지, 노선상가 및 업무용건물, 병원, 금융기관, 백화점,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 빌라, 주상용건물, 종교시설, 관공서, 공원, 학교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음.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제차량의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에 버스승강장 및 지하철역이 소재하는 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사정도 무난시됨.

(3) 건물의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15층건중 제1층 제103호 단위세대로서,
(집합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 1991.08.12)
외벽: 시멘트몰탈위 페인트 등 마감,
내벽: 벽지, 타일 등 마감,
바닥: 장판지깔기, 타일 등 마감,
창호: 샷시 이중창 등의 구조임.

(4) 이용상태

(가) 아파트로 이용중임.

(5) 설비내역

본건은 위생 및 급배수설비, 도시가스에 의한 개별난방설비, 승강기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이 되어 있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본건은 북서측 하향경사지대내에 자체지반 비교적 평탄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도로에 의거 분리된 2필일단의 장방형의 토지로서, 일단의 아파트부지로 이용중임.

(7) 인접 도로상태등

본건 아파트단지가 도심간선도로인 '지범로'와 접하고 있으며, '범안로', '청호로', '무학로', '동대구로', '청수로', '수성로', '신천대로', '신천동로', '앞산순환로' 등과의 연계가 가능함.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이며,

기호(2):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로2류(폭 30m~35m)(접합), 중로2류(폭 15m~20m)(접합), 중로3류(폭 12m~1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대보호구역(용지초등학교)<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지구<택지개발촉진법>, (하천)은 건설과{666-2922 2991}확인임.

(9)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구분건물 감정평가요항표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건물의 구조 (4) 이용상태
(5) 설비내역 (6) 토지의 형상 및 이용상태 (7) 인접 도로상태 등
(8)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9) 공부와의 차이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10)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가. 임대관계
미상임.

나. 기타
본건의 호별위치는 집합건축물대장 및 현장에서 조사된사항을 근거로 표시하였으며, 내부마감상태 등은 이해관계인 부재 및 폐문으로 외부에서 투시가능한 전경, 관리사무소 및 인근주민의 탐문 등에 의거 인근 동유형 아파트의 표준적인 내부구조, 사용자재 및 통상적인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였으니 경매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 역 위 치 도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5동 1층 103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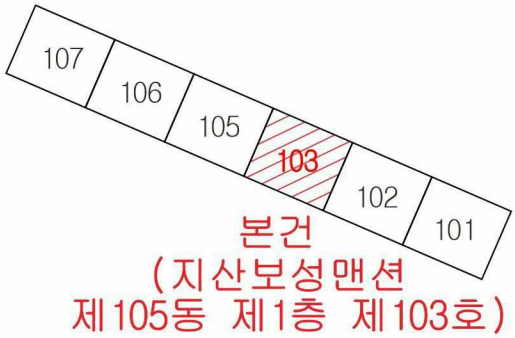
위 치 도

소 재 지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산동 1270-1외 지산보성맨션 105동 1층 103호



Free Scale

호별배치도



사 진 용 지



본건 전경(동전체)



본건 전경(동전체)



본건 외부전경



본건